

「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」 일부개정(안)

### 1. 개정이유

항공안전법 위임범위에 맞게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항공안전법 제27조의 위임범위에 맞게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변경(안 제13조)
- 나. 기술표준품의 고장, 기능장애 및 결함보고 사항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3항과 동일하게 반영(안 제21조)
- 다. 항공안전법 제27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하위 고시에서 정한 소유권의 변경, 양도 금지 등을 삭제(안 제22조, 안 제26조)

라.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취소 규정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4항과 동일하게 반영(안 제25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「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」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항공기술과)로 2022년 9월 13일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 : (339-0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

(☎ 044-201-4292, 팩스 044-201-5630)

※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(입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